

결 정 서

□ 신청인 ○○○
□ 처분청 ▼▼▼

주 문

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원처분의 요지

□□□(이하 ‘청구인’ 이라고 한다)은 2015년도에 (주)□□□ 주식 □,□□□,□□□주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□□□세무서로부터 양도 소득세 □□,□□□,□□□,□□□원을 부과처분 받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□,□□□,□□□,□□□원을 2020.2.28. 자진 신고·납부하였다.

2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2015.6.24. (주)□□□ 주식 □,□□□,□□□주를 양도하고 2015.4.7.을 명의개서일 즉 양도일로 하여 주식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(이하 ‘상증세법’)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(1주당 평가액 □,□□□원), 총양도금액을 □□,□□□,□□□,□□□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□,□□□,□□□,□□□원,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 □□□,□□□,□□□원을 신고·납부하였다.

추후 2019.9.23. □□지방국세청에서 주주변동조사를 개시한 바, 청구인이 신고한 2015.4.7.을 양도일(명의개서일)로 보지 않고 잔금청산일인 2015.6.30.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주식을 2015.6.30. □□□ 주식 공모예정가액(1주당 □□,□□□원)을 시가로 하여 1주당 평가액을 □□,□□□원으로 재평가하여 □□□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고 □□□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□□,□□□,□□□,□□□원을 고지하였다.

그러나 주식발행법인 (주)□□□는 당시 법인세 신고당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·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명의개서일을 2015.4.7.자로 하였던 점, 또한 2015.3.26. 주식매매계약서에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□,□□□원으로 합의(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및 직전년도인 2014년말 공시자료 기준으로 순자산가치 평가)한 것이므로 □□지방국세청이 주주변동조사시 양도일을 2015.6.30. 잔금청산일로 하여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□□□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 조사결과에 따라 □□□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당과소신고

하였다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.

3. 쟁점 및 인정사실

가. 쟁점

(1) 청구인과 □□지방국세청의 양도시기와 상증세법상 1주당 평가액 상이

<청구인·□□지방국세청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>

구분	청구인	□□지방국세청
양도일자	2015.4.17. (명의개서일)	2015. 6. 30. (잔금청산일)
상증세법상 1주당 평가액	□,□□□원	□□,□□□원

(2) 청구인이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 □,□□□,□□□,□□□원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

나. 인정사실

이 사건 이의신청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□□□세무서장은 2020.2.3.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□□,□□□,□□□,□□□원을 납부기한 2020.2.29.로 하여 부과처분하였고, 청구인은 2020.2.25.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 합계 □,□□□,□□□,□□□원을 ▽▽▽에게 신고하고 2020.2.28.납부한 후, 지방소득세 납부의 위법·부당함을 주장하며 2020.5.26. ▽▽▽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.

4. 관련 법령

● 지방세법 제86조(납세의무자 등) ①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소득세 또는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● 지방세기본법 제34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.

7. 지방소득세: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·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

● 지방세법 제97조(결정과 경정)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.

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.

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,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.

5. 판단

가. 청구인과 국세청이 주장한 각각의 양도시기 및 상증세법상 1주당 평가액의 적법성 여부는 □□□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

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▽▽▽이 결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니며,

나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【납세의무의 성립시기】 1항 7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·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, 2015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 세액이 국세청에 따른 경정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의 양도소득세가 2020.2.3. 부과처분이후 경정결정이 된 바 없으므로 지방소득세 납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.

※판례:조심2016지330(2016.04.12.)

6. 결 론

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0. 8. 3.

남 양 주 시 장